

□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조 (총칙)

본 규정은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수석부회장(이하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평의원으로 한다.

제3조 (후보자)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현직 부회장
2. 정회원으로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 (선거관리)

4-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입후보 등록을 공고한다.

4-2.

후보자는 A4용지 3쪽 이내의 이력서 및 선거공약을 후보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4-3.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4-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확인하여 공고한다.

4-5.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과 일정을 확정하여 공고한다.

4-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선거인단에게 알리고 학회홈페이지를 통하여 학회 회원에게 알린다.

제5조 (투표)

5-1. 우편 투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우편을 통하여 선거인단에게 송부한다.

②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거인은 1명의 후보에 기표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송부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인은 찬반 기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송부한다.

④ 기표된 투표용지는 잠금 장치된 보관함에 넣어 개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까지 보관한다.

5-2. 온라인 투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선거인단에게 학회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선거방법을 공지한다.

②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거인은 1명의 후보를 선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투표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인은 찬반 선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투표한다.

④ 온라인 투표결과는 투표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표하고 당일 공고한다.

제6조 (당선자의 결정)

1.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개표관리업무를 관장한다.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인단의 과반수이상이 투표하여야 하며,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확정된다.

4. 3항에서 후보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후보 1인을 추대하여 확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태양광발전학회 2020 수석부회장 선거 일정(안)

마감일정	업무내용
2019. 06. (이사회)	선관위 위원 추천 및 구성, 평의원 구성
2019. 07. 19.(금)	선관위 규정 확정, 선거일정 확정
2019. 09. 02.(월)	선거일정 및 후보등록 안내 공고
2019. 09. 04.(수) 09:00 ~ 09. 23.(월) 24:00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 및 등록 기간
2019. 09. 30.(월)	수석부회장 후보자 명단 확정 공고, 투표 방법 및 일정 공고
2019. 10. 01.(화) 09:00 ~ 10. 22.(화) 18:00	수석 부회장 선출 투표 기간
2019. 10. 22.(화) 18:00	수석 부회장 선출 투표 마감, 투표결과 개표 및 결과 발표
정기총회 (2019. 11. 21(목) 예정)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감사, 이사회 구성 및 정기 총회에서 신임임원 인준
2019.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임원 취임승인 신청
2020. 01.	법원 등기
2020. 01.	2020년도 신년하례식에서 임원 인수인계

※ 선관위원장이 추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